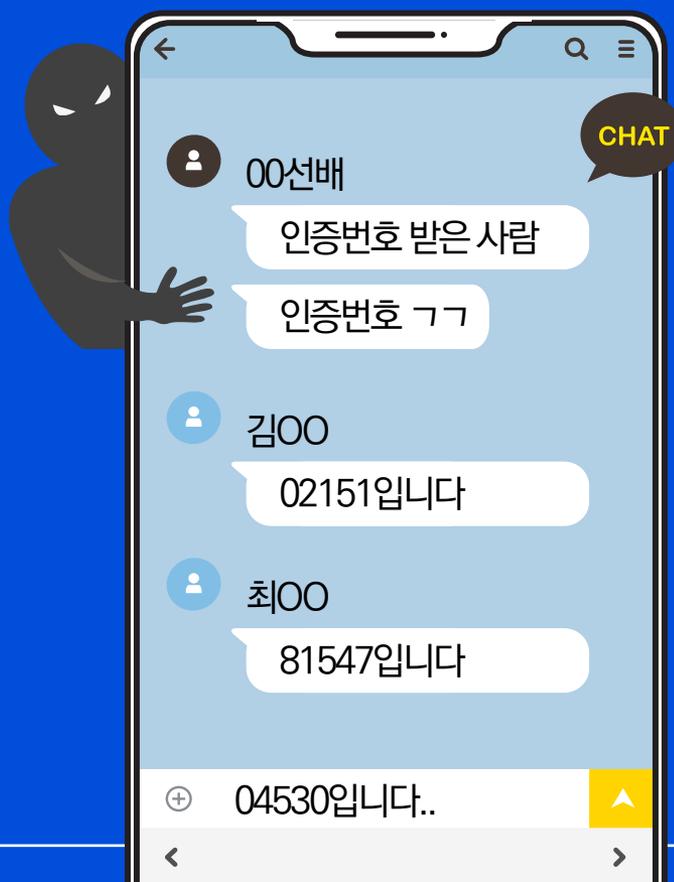


신종유형 발생경보 제8호

휴대폰 인증번호

전송 요구





알려주기
싫은데..

뭐야 이거
어디에
쓰이는 거지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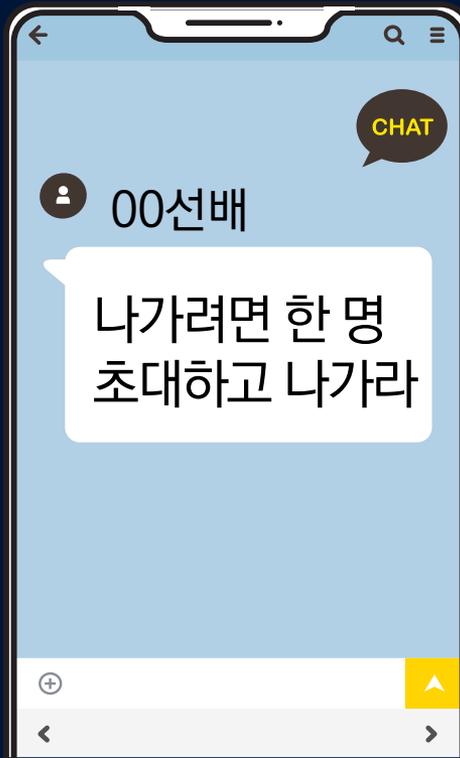
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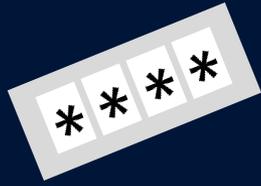
최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
친구나 후배를 초대하고,

개인정보와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
보낼 것을 요구하는 사례 급증



단톡방을 나가려면 친구나 후배 등을
초대한 후 나갈 것을 강요하기도..





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.

타인의 인증번호로
인증서 발급받은 계정



0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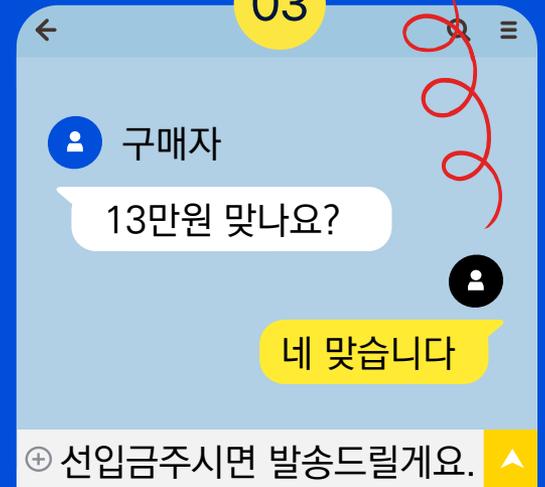
**명의자
계정 해킹**

02



**불법사이트
무단가입**

03



**보이스피싱,
중고물품 사기
등 범죄 활용**

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**인증번호**를
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**횡득**하고 사용하는 행위는
「개인정보보호법」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 등 **명백한 범죄**입니다.



친구·선배 등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면!

계속되는 요구에 인증번호를 보냈다면!

즉시 학교폭력 상담센터(117)로 연락하세요.



〈적용법조〉

- 「정보통신망법」 제71조제1항제11호, 제48조제1항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7조제7호, 제30조 1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70조제2호 10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- 「전자서명법」 제24조제1항제2호, 제19조제2항제1호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- 「전자서명법」 제24조제2항, 제19조제2항제2호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

학생 피해예방 수칙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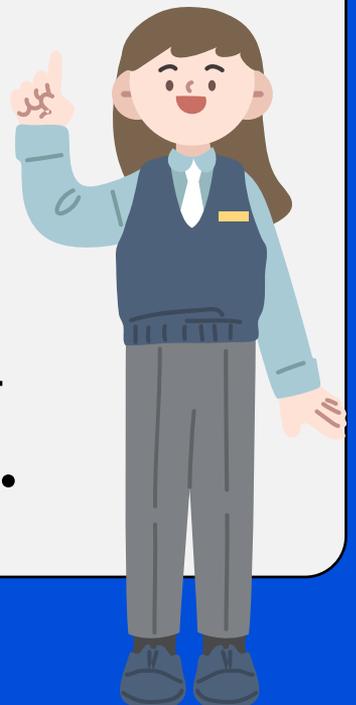
타인에게 **개인정보**(생년월일, 주민번호, 보호자 연락처)를
알려주지 마세요.

2

친구, 선배들의 부당한 인증번호 요구가 있을 시
즉시 보호자·선생님과 상담하거나
학교폭력 상담센터(117)로 연락하세요.

3

인증번호 요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
학교폭력 상담센터(117)에 신고해 주세요.





학부모 피해예방 수칙

- 1**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**함께 대화해 주세요.**
- 2** 자녀가 친구, 선후배들과 개인정보(생년월일, 주민번호 등), 휴대폰 인증번호, SNS 비밀번호 등을 **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.**
- 3** 자녀가 보호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,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타인에게 알려준 것은 아닌지 **충분한 대화와 지도해 주세요.**
- 4** 자녀가 강요에 의해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면 **학교폭력 신고센터(117)와 상담하세요.**

